

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 안	26-66
번 호	관련

발의년월일: 2026. 7. 6.

발 의 자: 차해영 의원

1. 수정이유

부칙 제3조 제35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18항부터 제56항까지를 각각 제17항부터 제54항까지로 수정하고자 함

2. 수정내용

가. 부칙 제3조 제35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18항부터 제56항까지를 각각 제17항부터 제54항으로 수정

나. 기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함

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부칙 제3조제16항 중 ““청소행정과장”으로”를 ““청소행정과장”으로, 제5조의2제4항제1호 중 “예산정책과장”을 “기획예산과장”으로, 제6조제2항 중 “자원순환과장”을 “청소행정과장”으로, “재활용관리팀장”을 “자원재활용팀장”으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7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18항부터 제34항까지를 각각 제17항부터 제33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 제35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36항부터 제56항까지를 각각 제34항부터 제54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 제49항(중전의 제51항)부터 제54항(중전의 제56항)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④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제2호 중 “행정지원국장”을 “행정관리국장”으로, 제9조제3항 중 “실뿌리복지과장”을 “생활보장과장”으로, “어르신동행과장”을 “어르신정책과장”으로, “장애인복지과장”을 “장애인정책과장”으로

한다.

㉔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3항 중 “행정지원국장”을 “행정관리국장”으로, “예산정책과장”을 “기획예산과장”으로 한다.

㉕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3항 중 “행정지원국장”을 “행정관리국장”으로, 제10조제4항 중제2호 중 “예산정책과장”을 “기획예산과장”으로, 제10조제4항제4호 중 “도로개선과장”을 “도로과장”으로 한다.

㉖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3항 중 “행정지원국장”을 “행정관리국장”으로 한다.

㉗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항 중 “복지동행국장”을 “복지국장”으로 한다.

㉘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항제1호 중 “복지동행국장”을 “복지국장”으로, “도시관리국장”을 “도시환경국장”으로 한다.

수정안 조문대비표

개 정 안	수 정 안
부 칙	부 칙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6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.	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6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는 시행 당시 구본청·보건소의 국·담당관·과 간에 소관사무의 이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따라 각각의 소관사무를 승계한다.	제2조(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는 시행 당시 구본청·보건소의 국·담당관·과 간에 소관사무의 이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따라 각각의 소관사무를 승계한다.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	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제3항 중 “고용협력과장”을 “지역경제과장”으로, 제9조제3항 중 “복지동행국장”을 “복지국장”으로 한다.	제4조제3항 중 “고용협력과장”을 “지역경제과장”으로, 제9조제3항 중 “복지동행국장”을 “복지국장”으로 한다.

②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복지동행국장”을 “복지국장”으로 한다.

③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2호 중 “새마포담당관”을 “기획예산과장”으로, 제3조제2항제4호 중 “주차관리과장”을 “교통지도과장”으로, 제3조제2항제5호 중 “도로개선과장”을 “도로과장”으로, 제3조제2항제6호 중 “물관리과장”을 “치수과장”으로 한다.

④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 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②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복지동행국장”을 “복지국장”으로 한다.

③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2호 중 “새마포담당관”을 “기획예산과장”으로, 제3조제2항제4호 중 “주차관리과장”을 “교통지도과장”으로, 제3조제2항제5호 중 “도로개선과장”을 “도로과장”으로, 제3조제2항제6호 중 “물관리과장”을 “치수과장”으로 한다.

④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 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주차관리과장”을
“교통지도과장”으로, 제7조 중 “운
수질서관리팀장”을 “운수관리팀
장”으로 한다.

⑤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
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일
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4항제1호 중 “예산정책과
장, 보행행정과장”을 “기획예산과
장, 건설관리과장”으로 한다.

⑥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
복구기금 설치 조례」 일부를 다
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도로개선과장”을
“도로과장”으로, 제8조3항 중 “예
산정책과장“을 “기획예산과장”으
로, “도로개선과장”을 “도로과장”
으로, “물관리과장”을 “치수과장”
으로 한다.

⑦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
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
다.

제3조제2항 중 “주차관리과장”을
“교통지도과장”으로, 제7조 중 “운
수질서관리팀장”을 “운수관리팀
장”으로 한다.

⑤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
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일
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4항제1호 중 “예산정책과
장, 보행행정과장”을 “기획예산과
장, 건설관리과장”으로 한다.

⑥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
복구기금 설치 조례」 일부를 다
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도로개선과장”을
“도로과장”으로, 제8조3항 중 “예
산정책과장“을 “기획예산과장”으
로, “도로개선과장”을 “도로과장”
으로, “물관리과장”을 “치수과장”
으로 한다.

⑦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
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
다.

별표 주관국란 중 “행정지원국(행정지원과)”을 “행정관리국(총무과)”으로, “복지동행국(어르신동행과)”을 “복지국(어르신정책과)”으로, “복지동행국(장애인복지과)”을 “복지국(장애인정책과)”으로, “관광경제국(경제진흥과)”을 “도시환경국(공원녹지과)”으로, “도시관리국(부동산정보과)”을 “도시환경국(부동산정보과)”으로 한다.

⑧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제2항 중 “새마포담당관”을 “기획예산과장”으로 한다.

⑨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새마포담당관”을 “기획예산과장”으로 한다.

⑩ 「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

별표 주관국란 중 “행정지원국(행정지원과)”을 “행정관리국(총무과)”으로, “복지동행국(어르신동행과)”을 “복지국(어르신정책과)”으로, “복지동행국(장애인복지과)”을 “복지국(장애인정책과)”으로, “관광경제국(경제진흥과)”을 “도시환경국(공원녹지과)”으로, “도시관리국(부동산정보과)”을 “도시환경국(부동산정보과)”으로 한다.

⑧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제2항 중 “새마포담당관”을 “기획예산과장”으로 한다.

⑨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새마포담당관”을 “기획예산과장”으로 한다.

⑩ 「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

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새마포담당관”을 “기획예산과”로, 제4조제1항 중 “새마포담당관”을 “기획예산과장”으로, 제6조제1항 중 “새마포담당관”을 “기획예산과”로, 제7조 중 “새마포담당관”을 “기획예산과장”으로 한다.

⑪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제2호 및 제12조제2항 중 “행정지원국장”을 “행정관리국장”으로 한다.

⑫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·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새마포담당관”을 “기획예산과장”으로 한다.

⑬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공무

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새마포담당관”을 “기획예산과”로, 제4조제1항 중 “새마포담당관”을 “기획예산과장”으로, 제6조제1항 중 “새마포담당관”을 “기획예산과”로, 제7조 중 “새마포담당관”을 “기획예산과장”으로 한다.

⑪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제2호 및 제12조제2항 중 “행정지원국장”을 “행정관리국장”으로 한다.

⑫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·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새마포담당관”을 “기획예산과장”으로 한다.

⑬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공무

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제3항 중 “환경녹지국장”을 “행정관리국장”으로, “깨끗한마포과장”을 “청소행정과장”으로, 제3조의2제4항제1호 중 “예산정책과장”을 “기획예산과장”으로 한다.

⑭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환경녹지국장”을 “행정관리국장”으로, “맑은환경과장”을 “환경과장”으로 한다.

⑮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환경녹지국장”을 “행정관리국장”으로, 제10조2항

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제3항 중 “환경녹지국장”을 “행정관리국장”으로, “깨끗한마포과장”을 “청소행정과장”으로, 제3조의2제4항제1호 중 “예산정책과장”을 “기획예산과장”으로 한다.

⑭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환경녹지국장”을 “행정관리국장”으로, “맑은환경과장”을 “환경과장”으로 한다.

⑮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환경녹지국장”을 “행정관리국장”으로, 제10조2항

중 “자원순환과장”을 “청소행정과장”으로, 제12조2항 중 “자원순환과장”을 “청소행정과장”으로 한다.

⑯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제3항 중 “환경녹지국장”을 “행정관리국장”으로, “자원순환과장”을 “청소행정과장”으로 한다.

⑰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제4항제1호 중 “예산정책과장”을 “기획예산과장”으로, 제6조제2항 중 “자원순환과장”을 “청소행정과장”으로, “재활용관리팀장”을 “자원재활용팀장”으로 한다.

중 “자원순환과장”을 “청소행정과장”으로, 제12조2항 중 “자원순환과장”을 “청소행정과장”으로 한다.

⑯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제3항 중 “환경녹지국장”을 “행정관리국장”으로, “자원순환과장”을 “청소행정과장”으로, 제5조의2제4항제1호 중 “예산정책과장”을 “기획예산과장”으로, 제6조제2항 중 “자원순환과장”을 “청소행정과장”으로, “재활용관리팀장”을 “자원재활용팀장”으로 한다.

⑰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오염 행위 신고 포상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 중 “환경녹지국장”을 “도시환경국장”으로, “깨끗한마포

⑮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오염 행위 신고 포상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 중 “환경녹지국장”을 “도시환경국장”으로, “깨끗한마포과장”을 “청소행정과장”으로, “맑은환경과장”을 “환경과장”으로, “물관리과장”을 “치수과장”으로 한다.

⑯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환경녹지국장”을 “도시환경국장”으로, 제8조 중 “맑은환경과장”을 “환경과장”으로 한다.

⑰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제1호 중 “예산정책과장”을 “기획예산과장”으로 한다.

⑱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

과장”을 “청소행정과장”으로, “맑은환경과장”을 “환경과장”으로, “물관리과장”을 “치수과장”으로 한다.

⑲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환경녹지국장”을 “도시환경국장”으로, 제8조 중 “맑은환경과장”을 “환경과장”으로 한다.

⑳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제1호 중 “예산정책과장”을 “기획예산과장”으로 한다.

㉑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3항 중 “재정관리국장, 복지동행국장, 도시관리국장”을 “기획재정국장, 복지국장, 도시환경국

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」
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3항 중 “재정관리국장, 복지동행국장, 도시관리국장”을 “기획재정국장, 복지국장, 도시환경국장”으로 한다.

②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행정지원국장”을 “행정관리국장”으로 한다.

③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1호 중 “재정관리국장”을 “기획재정국장”으로, 제7조제2항 중 “예산정책과장”을 “기획예산과장”으로 한다.

④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장”으로 한다.

⑤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행정지원국장”을 “행정관리국장”으로 한다.

⑥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1호 중 “재정관리국장”을 “기획재정국장”으로, 제7조제2항 중 “예산정책과장”을 “기획예산과장”으로 한다.

⑦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3항제1호 중 “행정지원국장, 재정관리국장, 복지동행국장”을 “행정관리국장, 기획재정국장, 복지국장”으로, 제19조 중 “예산정책과장”을 “기획예산과장”으로 한

제12조제3항제1호 중 “행정지원국장, 재정관리국장, 복지동행국장”을 “행정관리국장, 기획재정국장, 복지국장”으로, 제19조 중 “예산정책과장”을 “기획예산과장”으로 한다.

㉕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재정관리국장”을 “기획재정국장”으로, 제3조제3항 중 “행정지원국장, 복지동행국장, 도시관리국장, 행정지원과장”을 “행정관리국장, 복지국장, 도시환경국장, 총무과장”으로, 제7조제1항 중 “예산정책과장”을 “기획예산과장”으로 한다.

㉖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행정지원국장”을

다.

㉗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재정관리국장”을 “기획재정국장”으로, 제3조제3항 중 “행정지원국장, 복지동행국장, 도시관리국장, 행정지원과장”을 “행정관리국장, 복지국장, 도시환경국장, 총무과장”으로, 제7조제1항 중 “예산정책과장”을 “기획예산과장”으로 한다.

㉘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행정지원국장”을 “행정관리국장”으로, “재정관리국장”을 “기획재정국장”으로, “도시관리국장”을 “도시환경국장”으로, 제7조제2항 중 “예산정책과장”을 “기획예산과장”으로 한다.

“행정관리국장”으로, “재정관리국장”을 “기획재정국장”으로, “도시관리국장”을 “도시환경국장”으로, 제7조제2항 중 “예산정책과장”을 “기획예산과장”으로 한다.

㉞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3항 중 “재정관리국장”을 “기획재정국장”으로, “복지동행국장”을 “복지국장”으로 한다.

㉟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3항 중 “재정관리국장”을 “기획재정국장”으로, 제9조제4항 중 “복지동행국장”을 “복지국장”으로, “도시관리국장”을 “도시환경국장”으로 한다.

㊱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」 일부를 다음

㉞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3항 중 “재정관리국장”을 “기획재정국장”으로, “복지동행국장”을 “복지국장”으로 한다.

㉞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3항 중 “재정관리국장”을 “기획재정국장”으로, 제9조제4항 중 “복지동행국장”을 “복지국장”으로, “도시관리국장”을 “도시환경국장”으로 한다.

㉟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 중 “재정관리국장”을 “기획재정국장”으로 한다.

㊱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

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 중 “재정관리국장”을 “기획재정국장”으로 한다.

㉔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4조제3항 중 “재정관리국장”을 “기획재정국장”으로 한다.

㉕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3항제1호 중 “경제진흥과장”을 “지역경제과장”으로 한다.

㉖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2항제1호 중 “경제진흥과장”을 “지역경제과장”으로, 제17조제2항제2호 중 “디지털재정과장”을 “기획예산과장”으로 한다.

㉗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진흥

포상금 지급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4조제3항 중 “재정관리국장”을 “기획재정국장”으로 한다.

㉔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3항제1호 중 “경제진흥과장”을 “지역경제과장”으로 한다.

㉕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2항제1호 중 “경제진흥과장”을 “지역경제과장”으로, 제17조제2항제2호 중 “디지털재정과장”을 “기획예산과장”으로 한다.

㉖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진흥 기금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제3호 중 “가족행복지원과장”을 “가족정책과장”으로 한다.

기금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제3호 중 “가족행복지원과장”을 “가족정책과장”으로 한다.

③④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복지동행국장”을 “복지국장”으로 한다.

③⑤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오염 행위 신고 포상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 중 “환경녹지국장”을 “도시환경국장”으로, “깨끗한마포과장”을 “청소행정과장”으로, “맑은환경과장”을 “환경과장”으로, “물관리과장”을 “치수과장”으로 한다.

③⑥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③③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복지동행국장”을 “복지국장”으로 한다.

③④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환경녹지국장”을 “도시환경국장”으로, 제8조 중 “맑은환경과장”을 “환경과장”으로 한다.

③⑤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복지동행국장”을 “복지국장”으로, 제12조제2항 중 “장애인복지업무”를 “장애인정책업무”로 한다.

③⑥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환경녹지국장”을 “도시환경국장”으로, 제8조 중 “맑은환경과장”을 “환경과장”으로 한다.

㉔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복지동행국장”을 “복지국장”으로, 제12조제2항 중 “장애인복지업무”를 “장애인정책업무”로 한다.

㉕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실뿌리복지과장”을 “생활보장과장”으로 한다.

㉖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제1호 중 “복지동행국장”을 “복지국장”으로, 제3조제4

제12조제2항 중 “실뿌리복지과장”을 “생활보장과장”으로 한다.

㉗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제1호 중 “복지동행국장”을 “복지국장”으로, 제3조제4항 중 “실뿌리복지과장”을 “생활보장과장”으로 한다.

㉘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급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복지동행국장”을 “복지국장”으로, “실뿌리복지과장”을 “생활보장과장”으로 한다.

㉙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1항 중 “복지동행국장”을 “미래교육국장”으로 한다.

㉚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아동

항 중 “실뿌리복지과장”을 “생활보장과장”으로 한다.

④①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복지동행국장”을 “복지국장”으로, “실뿌리복지과장”을 “생활보장과장”으로 한다.

④①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별영향 평가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1항 중 “복지동행국장”을 “미래교육국장”으로 한다.

④②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아동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제1호 중 “복지동행국장”을 “미래교육국장”으로 한다.

④③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제1호 중 “복지동행국장”을 “미래교육국장”으로 한다.

④①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6항 중 “통합지원 업무담당 팀장”을 “통합지원협의체 업무담당 팀장”으로 한다.

④②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방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제14호 중 “행정지원국장”을 “행정관리국장”으로, 제4조 중 “행정지원과장”을 “총무과장”으로 한다.

④③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6항 중 “통합지원 업무담당 팀장”을 “통합지원협의체 업무담당 팀장”으로 한다.

④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제14호 중 “행정지원국장”을 “행정관리국장”으로, 제4조 중 “행정지원과장”을 “총무과장”으로 한다.

⑤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4항 중 “행정지원국장”을 “행정관리국장”으로, “행정지원과장”을 “총무과장”으로 한다.

⑥ 「서울특별시 마포구민 휴양소 운영 및 관리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2항 중 “행정지원국장”을 “행정관리국장”으로 한다.

제8조제4항 중 “행정지원국장”을 “행정관리국장”으로, “행정지원과장”을 “총무과장”으로 한다.

④ 「서울특별시 마포구민 휴양소 운영 및 관리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2항 중 “행정지원국장”을 “행정관리국장”으로 한다.

⑤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물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행정지원국장”을 “행정관리국장”으로, “홍보미디어과장”을 “홍보담당관”으로, “예산정책과장”을 “기획예산과장”으로, 제19조제1항 중 “홍보미디어과장”을 “홍보담당관”으로 하고, 별지 제1호서식, 별지 제7호서식,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가. 별지 제1호서식의 참조란 중 “홍보미디어과장”을 “홍보담

④⑦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물
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」 일부
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행정지원국장”을
“행정관리국장”으로, “홍보미디어
과장”을 “홍보담당관”으로, “예산
정책과장”을 “기획예산과장”으로,
제19조제1항 중 “홍보미디어과장”
을 “홍보담당관”으로 하고, 별지
제1호서식, 별지 제7호서식, 별지
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을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가. 별지 제1호서식의 참조란 중
“홍보미디어과장”을 “홍보담
당관”으로 한다.

나. 별지 제7호서식의 참조란 중
“홍보미디어과장”을 “홍보담
당관”으로 한다.

다. 별지 제8호서식의 참조란 중
“홍보미디어과장”을 “홍보담
당관”으로 한다.

라. 별지 제9호서식의 참조란 중

당관”으로 한다.

나. 별지 제7호서식의 참조란 중
“홍보미디어과장”을 “홍보담
당관”으로 한다.

다. 별지 제8호서식의 참조란 중
“홍보미디어과장”을 “홍보담
당관”으로 한다.

라. 별지 제9호서식의 참조란 중
“홍보미디어과장”을 “홍보담
당관”으로 한다.

④⑥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징물
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
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행정지원국장”을
“행정관리국장”으로 한다.

④⑦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식지
발행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
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및 제7조제3항 중 “홍보미
디어과장”을 “홍보담당관”으로
한다.

④⑧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인터넷방

“홍보미디어과장”을 “홍보담당관”으로 한다.

④⑧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징물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행정지원국장”을 “행정관리국장”으로 한다.

④⑨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및 제7조제3항 중 “홍보미디어과장”을 “홍보담당관”으로 한다.

⑤⑩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행정지원국장”을 “행정관리국장”으로, 제6조제4항 중 “미디어채널팀장”을 “미디어팀장”으로 한다.

(51)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」 일부를 다음

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행정지원국장”을 “행정관리국장”으로, 제6조제4항 중 “미디어채널팀장”을 “미디어팀장”으로 한다.

④⑨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제2호 중 “행정지원국장”을 “행정관리국장”으로, 제9조제3항 중 “실뿌리복지과장”을 “생활보장과장”으로, “어르신동행과장”을 “어르신정책과장”으로, “장애인복지과장”을 “장애인정책과장”으로 한다.

⑤⑩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3항 중 “행정지원국장”을 “행정관리국장”으로, “예산정책

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제2호 중 “행정지원국장”을 “행정관리국장”으로, 제9조제3항 중 “실뿌리복지과장”을 “생활보장과장”으로, “어르신동행과장”을 “어르신정책과장”으로, “장애인복지과장”을 “장애인정책과장”으로 한다.

(52)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3항 중 “행정지원국장”을 “행정관리국장”으로, “예산정책과장”을 “기획예산과장”으로 한다.

(53)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3항 중 “행정지원국장”을 “행정관리국장”으로, 제10조제4항중제2호 중 “예산정책과장”을 “기

획예산과장”으로 한다.

⑤1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3항 중 “행정지원국장”을 “행정관리국장”으로, 제10조제4항중제2호 중 “예산정책과장”을 “기획예산과장”으로, 제10조제4항제4호 중 “도로개선과장”을 “도로과장”으로 한다.

⑤2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공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3항 중 “행정지원국장”을 “행정관리국장”으로 한다.

⑤3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항 중 “복지동행국장”을 “복지국장”으로 한다.

획예산과장”으로, 제10조제4항제4호 중 “도로개선과장”을 “도로과장”으로 한다.

(54)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3항 중 “행정지원국장”을 “행정관리국장”으로 한다.

(55)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항 중 “복지동행국장”을 “복지국장”으로 한다.

(56)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항제1호 중 “복지동행국장”을 “복지국장”으로, “도시관리국장”을 “도시환경국장”으로 한다.

⑤4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항제1호 중 “복지동행국장”을 “복지국장”으로, “도시관리국장”을 “도시환경국장”으로 한다.